의정활동보고서

제264회 임시회(2013. 8. 23 ~ 9.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오늘 처서를 맞아 한풀 꺾인 가운데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과 동해안 적조피해 현장방문 등 도정과 민생현장을 살피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찜통 같은 무더위와 가뭄 속에도 에너지절약 실천과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중앙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제3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에 높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대 후반기 지난 1년 동안은 도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는 “소통 중심 의회”운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청와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를 찾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정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하며 일하는 경북의정을 펼쳐 오는데 의원님들이 온 정열을 받쳐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대 후반기 의정활동도 그 동안 노력하신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도정과 도민의 삶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스탄불 -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적 개최로 국익과 연결되는 문화외교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적조 조기 방제, 풍년농사 지원 등으로 도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묻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도민이 다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 사회복지 시설과 근로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민생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차 례

Ⅰ. 개 황 ····· 9

Ⅱ. 의사일정 ····· 12

Ⅲ. 의안처리 ····· 19

Ⅳ. 민원처리 ····· 21

Ⅴ. 본회의 보고사항 ····· 23

Ⅵ. 5분 자유발언 ····· 60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 ····· 60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울진) ····· 64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 68

□ 이영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안동) ····· 71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영덕) ····· 75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상주) ····· 80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김천) ····· 84

부 록

□ 조례안(23건) ····· 89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9월 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3일(금)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왕식 의원의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황이주 의원의 "경북을 항공 MRO 메카로 육성 촉구", 김명호 의원의 "호국경북, 광복 70주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영식 의원의 "도청이전지 이주민에 대한 대책", 박진현 의원의 "경북북부 918지방도 선형개량 촉구", 강영석 의원의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확보 방안", 배수향 의원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지방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제언"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23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1건, 기타안 3건 등 총2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중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예천시장, 강원도 속초시장, 주문진시장을 방문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 시책을 비교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인물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율곡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장계향’ 등 인물 조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신사임당의 선양사업 사례 등을 사업추진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재)문화엑스포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막행사 공식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지방문에서는 터키인 6.25 참전용사 감사행사에 터키인들에게 감사인사와 돈독한 우정을 나눴으며, 21세기 문화가 국력인 시대에 경북문화의 세계화와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고 도민 문화 복지 수준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고추유통공사를 들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확보 및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고추유통공사가 힘을 더 해주고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봉화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과 영주 풍기~단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민생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과 봉화지역의 폐교 재산의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역사·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인기 많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함께 견학하며 보다 내실 있는 체험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14:00

2. 회 기

가. 회기기간 : 2013년 8월 23일 ~ 9월 6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68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회	8	1	1	1	1	1	1	1	1	
누계	388	31	50	51	43	35	49	42	47	4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3(금)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성)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울진)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 안건처리 ○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9. 6(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안동)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영덕)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상주)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김천)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6(금) 11:00 (제2차)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3(금) 10:00	□ 안건심사 ○ 제265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3(금) 16:00~ 8. 24(토)	□ 현지방문 - 도의회 운영 관련 주요방향 및 현안토의 - 경주시 관광문화사업 현장확인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1:00	□ 안건심사 ㅇ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ㅇ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월) ~ 9. 4(수)	□ 현지방문 - 강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1:00	□ 안건심사 ㅇ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수) ~ 9. 5(목)	□ 현지방문 - 율곡연구원(여성인물 조명사업 견학)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1:00	□ 당면현안사항 보고 ㅇ 포플러장학기금 운용 개선 방안 ㅇ 경북관광공사 사업추진 실태 및 경영개선 방향 ㅇ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최종 점검사항 □ 안건심사 ㅇ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8. 30(금) ~ 9. 3(화)	□ 현지방문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터키행사 참석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1:00	□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추진상황 보고 □ 농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 안건심사 ㅇ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ㅇ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ㅇ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9(목)	□ 현지방문 - 영양 농기계임대사업장, 고추유통공사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30	□ 안건심사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 의용소방대 현장 간담회(경상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	
8. 29(목)	□ 현지방문 -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봉화) - 풍기~단산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영주)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30	□ 현지방문 ○ (구)봉화여·중고 재산 관리실태 점검 ○ 문경교육지원청사 이전예정부지 ○ 도교육청 이전 추진상황 점검	
9. 3(화) 10:30	□ 안건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6(금)	□ 안건심사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9 (464)	27 (453)	24 (360)	3 (89)	(4)	(3)	2 (8)	
조례안	소 계	24 (282)	23 (272)	20 (197)	3 (71)	(4)	(3)	1 (7)	
	의원 발의	17 (131)	17 (125)	14 (93)	3 (32)		(2)	(4)	
	도지사 제출	5 (102)	5 (99)	5 (76)	(22)	(1)	(1)	(2)	
	교육감 제출	2 (49)	1 (48)	1 (28)	(17)	(3)		1 (1)	
규칙안		(3)	(3)	(3)					
예산·결산		(25)	(25)	(8)	(17)				
동의·승인		(37)	(37)	(36)	(1)				
건의안		(3)	(3)	(3)					
결의안		2 (36)	1 (35)	1 (35)				1 (1)	
기타안		3 (78)	3 (78)	3 (78)					

※ ( )내는 제 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8)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3. 5. 16, 배수향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8. 13, 교육감,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8 (114)	4	1		2				1	
의 회 운 영	(2)									
기 획 경 제	(13)									
행 정 보건복지	3 (21)	3								
문 화 환 경	(8)									
농수산	1 (5)								1	
건 설 소 방	4 (60)	1	1		2					
교 육	(5)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4 (110)	4 (110)				4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2	2				1
문화환경						
농 수 산						1
건설소방	2	2				2
교 육						
특별위원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25건(조례안 24, 결의안1)

제출·발의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희수 의원 외 3인 (2013. 8.12)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3. 8. 14)
김종천 의원 (2013. 8.12)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이주 의원 외 5인 (2013. 8.1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추재천 의원 (2013. 8.12)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3. 8.1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진현 의원 외 3인 (2013. 8.12)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8. 14)
채옥주 의원 외 1인 (2013. 8.12)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3. 8.13)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발의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박병훈 의원 외 4인 (2013. 8.1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3. 8. 14)
김명호 의원 외 8인 (2013. 8.13)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
정영길 의원 외 7인 (2013. 8.12)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2013. 8. 14)
변우정 의원 외 5인 (2013. 8.1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변우정 의원 외 3인 (2013. 8.12)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찬걸 의원 (2013. 8.13)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
이왕식 의원 외 10인 (2013. 8.12)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 (2013. 8. 14)
이영식 의원 외 9인 (2013. 8.1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명호 의원 외 12인 (2013. 8.13)	경북북부권내 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
김원석 의원 (2013. 8.1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교 육 (2013. 8. 14)
구자근 의원 외 5인 (2013. 8.12)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3. 8.1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20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6. 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2013. 7.11 (제3431호)
〃	〃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32호)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33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 7.11 (제3434호)
〃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35호)
〃	〃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3436호)
〃	〃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제3437호)
〃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38호)
〃	〃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 (제3439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40호)
〃	〃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41호)
〃	〃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42호)
〃	〃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443호)
〃	〃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44호)
〃	〃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45호)
〃	〃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46호)
〃	〃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447호)
〃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3448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6.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 7.11 (제3449호)
〃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50호)

3. 위원회 활동 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8. 13	경주, 포항	• 적조피해 현장 확인 • 피해 어업인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o 경상북도의회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

- 일 시 : 2013. 6. 27(목) ~ 6. 28(금)
- 장 소 : 안동, 원주, 평창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이상용·장경식·장세헌·나현아·박태환 의원

o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영남권 연찬회 참석

- 일 시 : 2013. 6. 28(금) 10: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최우섭 의원

o 제50차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6. 28(금) 11: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o 군위 농산물푸드유통센터 개장식 참석

- 일 시 : 2013. 6. 28(금) 11:00
- 장 소 : 군위 농산물푸드유통센터
- 참 석 : 홍진규 의원

o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6. 28(금) 16:00
- 장 소 : 새누리당 경북도당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김희수·도기욱 의원

o 안용복루트 대마도 탐방

- 일 시 : 2013. 6. 28(금) ~ 6. 29(토)
- 장 소 : 대마도 일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김기홍·김명호·서정숙 의원

o 경북도민일보배 경북바둑대회 참석

- 일 시 : 2013. 6. 29(토) 10: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희수 의원

o 경북 시·군공무원 볼링대회 참석
- 일 시 : 2013. 6. 29(토) 10:00
- 장 소 : 구미 중앙볼링장
- 참 석 : 박태환 의원

o 국도 25호선(청도-경산) 개통행사 참석
- 일 시 : 2013. 6. 30(일) 15:00
- 장 소 : 남성현터널 입구
- 참 석 : 김세호·김창숙·박권현·서정숙 의원

o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 포럼 참석
- 일 시 : 2013. 7. 1(월) 14:00
- 장 소 : 대경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의원

o 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7. 2(화) 11:00
- 장 소 : 대구경북영어마을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o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2(화) 17:30
- 장 소 :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 참 석 : 서정숙 의원

o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포럼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0:30
- 장 소 : 경주 스위트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o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경북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0:30
- 장 소 : 의성 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말분·김명호·배수향·서정숙·이경임·이태식 의원

o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4:00
- 장 소 : 경주 동국대학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o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복원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5:00
- 장 소 : 문경 동로면
- 참 석 : 이시하·고우현·이경임 의원

o 제1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6:00
- 장 소 : 영천 3사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o 제7회 경북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4(목) 11:0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나기보 의원

o **'도청이전 신도시성공과 균형발전'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7. 4(목) 14:00
- 장 소 : 안동 가톨릭상지대학교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김명호·도기욱·이영식 의원

o **경상북도 닥터헬기 운항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7. 4(목) 15:00
- 장 소 : 안동병원 닥터헬기 계류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영기·이상용·김명호·이경임 의원

o **제2회 경주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09:30
- 장 소 : 경주 선재미술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o **경상북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14: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구자근·심정규·이태식 의원

o **경상북도 서예·문인화 대전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15:00
- 장 소 : 포항문예회관
- 참 석 : 장경식 의원

o 글로벌 여성네트워킹 엑스포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15:0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김영기 의원

o 남부권 신공항추진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16:0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김영기·홍진규 의원

o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7. 5(금) 18:00
- 장 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배수향 의원

o 제18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6(토) 11:30
- 장 소 : 영천 월드볼링장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o 창작오페라「아! 징비록」공연 참관

- 일 시 : 2013. 7. 6(토) 17:00
- 장 소 : 서울 KBS홀
- 참 석 : 김명호 의원

o 포항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7. 7(일) 10:30
- 장 소 : 포항 다목적체육관
- 참 석 : 김희수 의원

o 2013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 및 환송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8(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희원 의원

o 2013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교육 참석

- 일 시 : 2013. 7. 8(월) 14:3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정상진 위원장, 이상효·곽광섭·정영길·최학철·한창화 의원

o 경상북도의회 사회안전망연구회 세미나

- 일 시 : 2013. 7. 8(월) ~ 7. 9(화)
- 장 소 : 창원, 사천, 하동
- 참 석 : 박기진·배수향·윤성규 의원

o 2013 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출정식 참석

- 일 시 : 2013. 7. 9(화) 10: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창숙 의원

ㅇ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연찬회 참석**

- 일 시 : 2013. 7. 9(화) 11: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구자근 · 박태환 의원

ㅇ **2013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따른 규탄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3. 7. 9(화) 15:00
- 장 소 : 도의회 브리핑룸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경식 · 장세헌 · 서정숙 · 이왕식 의원

ㅇ **제5회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7. 10(수) 14:00
- 장 소 : 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윤성규 · 홍진규 의원

ㅇ **2013 바르게살기운동 경북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0(수) 15: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 장두욱 위원장, 장경식 · 김말분 · 김희수 · 이경임 의원

ㅇ **제13회 경북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0(수) 15:00
- 장 소 : 구미대학교 강당
- 참 석 : 구자근 · 박태환 · 이태식 의원

o 안동유교랜드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7. 11(목) 11:00
- 장 소 : 안동 유교랜드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경식·김명호·김세호·이영식 의원

o SK케미칼(주) 안동바이오공장 투자협정 MOU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7. 11(목) 14:00
- 장 소 : 안동 백신공장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이영식 의원

o 경상북도북부권에너지종합타운 입지선정 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7. 11(목) 14:00
- 장 소 : 안동시청 회의실
- 참 석 : 김세호 의원

o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7. 11(목) 14: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o 경상북도내 생활체육보디빌딩 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3(토) 11:00
- 장 소 : 포항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o FTA 대응 농촌지도자 혁신역량강화교육 참석

- 일 시 : 2013. 7. 15(월) 10:3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o 영덕소방서 개서식 참석

- 일 시 : 2013. 7. 15(월) 14:30
- 장 소 : 영덕소방서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기홍·이왕식 의원

o 경상북도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7. 16(화) 11: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이 달 의원

o 2013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7. 17(수) 11:0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구자근·심정규·이태식 의원

o 경상북도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통합 역량 강화 교육 참석

- 일 시 : 2013. 7. 17(수) 14:00
- 장 소 : 구미 센츄리호텔
- 참 석 : 윤창욱·구자근·이태식 의원

o 경산소방서 금천119안전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7. 18(목) 10:00
- 장 소 : 금천 119안전센터
- 참 석 : 김하수 의원

o 경상북도내 고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

- 일 시 : 2013. 7. 18(목) 10: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 참 석 : 김원석 의원

o 소외계층 자립기반마련 지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18(목) 11:00
- 장 소 : 경주 안강풋살구장
- 참 석 : 최학철 의원

o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개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18(목) 13:30
- 장 소 : 영덕읍 창포리
- 참 석 : 김기홍 의원

o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리더교육 참석

- 일 시 : 2013. 7. 18(목) 17: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이 달 의원

o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천시지부 영천노인대학 특강

- 일 시 : 2013. 7. 19(금) 10:00
- 장 소 :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o FTA대책특별위원회 산하 농업·농촌 현장지원단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7. 19(금)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강영석 의원

o 상주소방서 청리119안전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7. 19(금) 11:00
- 장 소 : 상주 청리119안전센터
- 참 석 : 한재석 의원

o 경상북도 창조경제 비전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3. 7. 22(월)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o 경상북도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참석

- 일 시 : 2013. 7. 23(화) 10: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o 구미 IT의료기술센터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23(화) 14:00
- 장 소 :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 참 석 : 윤창욱 의원

o 문경시 중소기업협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1:30
- 장 소 : 문경관광호텔
- 참 석 : 이시하·고우현·이경임 의원

o 제19회 경상북도 여성농민 한마당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3:3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영식·배한철 의원

o 대구경북여성경제인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4:00
- 장 소 : 엑스코 호텔 인터불고
- 참 석 : 송필각 의장

o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한재석 의원

o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6:30
- 장 소 : 포스코 포항제철소
- 참 석 : 장경식 의원

o 이스탄불엑스포 성공개최기원 해양순항훈련 엑스포기 전수식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10:00
- 장 소 : 해군사관학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o 제13회 전국시조경창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11:30
- 장 소 : 성주문화원
- 참 석 : 박기진 의원

o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2013 가족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11:30
- 장 소 : 성주 금수문화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기진 의원

o 제40회 경북4-H 야영교육 봉화식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19:3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강영석·한재석 의원

o 경북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청렴교육연수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09:30
- 장 소 : 구미대학교 본관 강당
- 참 석 : 박태환 의원

o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평가회의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o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수석교사 연수회 특강

- 일 시 : 2013. 7. 26(금) 10:3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홍광중 의원

o 유엔참전·정전 60주년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9:0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o 국제불빛축제 불빛퍼레이드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9:30
- 장 소 :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 참 석 : 김희수 의원

ㅇ **이스탄불-경주엑스포 D-30 준비상황보고회 및 축하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9:30
- 장 소 : 경주 봉황대 특설무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박권현·심정규 의원

ㅇ **2013년 전국 비치사커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7. 27(토) 10:00
- 장 소 : 울진 후포해수욕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ㅇ **제17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27(토) 11:30
- 장 소 : 영덕 문화체육센터
- 참 석 : 김기홍 의원

ㅇ **봉화은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7. 27(토) 12:00
- 장 소 : 봉화읍 내성천
- 참 석 : 권영만·김종천·김명호 의원

ㅇ **제10회 포항 국제 불빛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7. 27(토) 20:00
- 장 소 :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 참 석 : 채옥주·장두욱 위원장, 박기진·이상용·장경식·김명호·김창숙·김희수·박권현·이경임 의원

o 최경환 원내대표 3개 국책사업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09:30
- 장 소 : 대구가톨릭대 최요한관 2층 생가원
- 참 석 : 김영식 의원

o 제16회 대구대 총장기 전국고교 검도선수권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11:00
- 장 소 : 영천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o 기획재정부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 7. 31(수) 10:00
-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창숙 의원

o 제13회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7. 31(수) 18:30
- 장 소 :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 참 석 : 장경식·장세헌·김말분 의원

o 2013 영주수박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8. 1(목) 19:00
- 장 소 : 영주 서천둔치 일원
- 참 석 : 김종천 의원

o 무선충전 전기버스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3. 8. 6(화) 10:3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윤창욱·구자근·심정규 의원

o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합동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8. 6(화) 13:30
- 장 소 : 구미 호텔금오산
- 참 석 : 이태식 의원

o 경북조리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참석

- 일 시 : 2013. 8. 7(수) 09:30
- 장 소 : 구미대학교 창의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o 경북 영재교육담당 교원 세미나 및 영재교육연구회 하계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8. 7(수) 10:00
- 장 소 : 구미대학교 본관 강당
- 참 석 : 박태환 의원

o 2013 KBO총재배 전국중학 및 리틀주니어 야구대회 개막식

- 일 시 : 2013. 8. 7(수) 10:30
- 장 소 : 포항야구장
- 참 석 : 장경식 의원

ㅇ 경상북도 도민 참여교육 참석

- 일 시 : 2013. 8. 7(수) 15:30
- 장 소 : 예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도기욱 의원

ㅇ 제12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8. 7(수) 19:00
- 장 소 : 예천 한천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병훈·박진현·전찬걸·정상진·김수용 위원장, 이시하·고우현·권영만·김영기·김종천·박기진·이상용·강영석·곽광섭·김명호·김봉교·김하수·김희원·나기보·나현아·도기욱·배한철·변우정·윤성규·이경임·이영식·이왕식·이정호·정영길·최학철·한창화·홍진규 의원

ㅇ 2013 경북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8. 8(목) 11: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ㅇ 2013 Kovo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8. 8(목) 11:00
- 장 소 : 울진 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o 제7회 칠포국제재즈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8. 8(목) 18:30
- 장 소 : 포항 칠포해수욕장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장두욱 위원장, 장경식·김희수 의원

o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주)모린스코퍼레이션 MOU체결 참석

- 일 시 : 2013. 8. 9(금) 11: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김희수 의원

o 경북시각장애인 제3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3. 8. 9(금) 11:00
- 장 소 :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 참 석 : 장경식 의원

o 제57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3. 8. 11(일) 09:00
- 장 소 : 포항 충혼탑
- 참 석 : 김희수 의원

o 대한민국 국창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8. 11(일) 16:00
- 장 소 : 포항 효자아트홀
- 참 석 : 장경식 의원

o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8. 12(월) 10: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o 한·중 FTA 대응방안 심포지움 참석

- 일 시 : 2013. 8. 12(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한창화 의원

o 정부3.0 대토론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8. 13.(화) 15:3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o 제3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참석

- 일 시 : 2013. 8. 13(화) 18:00
- 장 소 : 포항 해도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권영만·장경식·장두욱·장세헌·강영석·곽광섭·김세호·김희수·나기보·이정호·최학철·한창화 의원

o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학·관 합동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8. 14(수) 14:0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o 제6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8. 14(수)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성규·홍진규 의원

o 친환경 무상급식 공청회 참석

- 일 시 : 2013. 8. 14(수) 14: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강영석·변우정·한창화 의원

o 제6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3. 8. 15(목) 10:00
- 장 소 : 성주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기진·정영길·추재천 의원

o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8. 16(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한재석 의원

o 제18회 경북옥외광고 디자인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참석

- 일 시 : 2013. 8. 19(월)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ㅇ **2013년 을지연습 참관**

- 일 시 : 2013. 8. 20(화) 13:30
- 장 소 : 도청 충무시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병훈·박진현·채옥주·정상진·장두욱·김수용 위원장, 김희수·배수향 의원

ㅇ **경상북도 YOYO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3. 8. 21(수) 15: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영식·김창숙·배한철·서정숙·윤성규 의원

【시·군 단위 행사】

o 구미시, 7월 호국보훈단체와 새마을 대청소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1(월) 07:00
- 장 소 : 구미 동락공원
- 참 석 : 장영석 의원

o 『등굣길 첫인사 녹색어머니와 함께 합시다』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3. 7. 2(화) 08:00
- 장 소 : 칠곡군 북삼읍 인평초등학교
- 참 석 : 추재천 의원

o 제16회 포항세오녀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3. 7. 2(화) 10: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말분 의원

o 국제로타리 3630지구 군위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7. 2(화) 14:00
- 장 소 : 군위 군민회관
- 참 석 : 홍진규 의원

o 구미 무을 춤새권역 도농교류센터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10:00
- 장 소 : 구 안곡초등학교
- 참 석 : 김봉교 의원

ㅇ 제7회 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7. 3(수)
- 장 소 : 청도군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권현 의원

ㅇ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7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4(목) 15:00
- 장 소 : 안동 시민회관
- 참 석 : 이영식 의원

ㅇ 풍기읍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6(토) 09:30
- 장 소 : 풍기읍 남원천
- 참 석 : 김종천 의원

ㅇ 제23회 새재기 생활체육전국정구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7. 6(토) 13:30
- 장 소 : 문경 국제정구장
- 참 석 : 고우현 의원

ㅇ 경산시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2호 개관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9(화) 16:00
- 장 소 : 경산시 서부1동 해오름아파트 내 도서관
- 참 석 : 김영식 의원

ㅇ **관석할머니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10(수) 11:00
- 장 소 : 봉화군 춘양면 관석할머니경로당
- 참 석 : 권영만 의원

ㅇ **포항시청노조 설립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7. 10(수) 11:00
- 장 소 : 포항 웨딩아이린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ㅇ **제18회 여성주간기념 여성연극 공연 관람**

- 일 시 : 2013. 7. 10(수) 14: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서정숙·윤성규 의원

ㅇ **2013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1(목) 10: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윤창욱·심정규·이태식 의원

ㅇ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개장식 참석**

- 일 시 : 2013. 7. 12(금) 11:00
- 장 소 : 고래불해수욕장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ㅇ **2013 세계 의성마늘 및 실버문화 축제 참석**

- 일 시 : 2013. 7. 13(토) 10:00
- 장 소 : 의성 마늘테마파크 일원
- 참 석 : 이왕식 의원

ㅇ **대한민국 상이군경 경북도지부 칠곡군지회 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7. 13(토) 11:00
- 장 소 : 칠곡 리베라웨딩
- 참 석 : 김희원 의원

ㅇ **제18회 여성주간기념 문경시 여성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5(월) 10:00
- 장 소 : 문경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시하 의원

ㅇ **2013 선진가정문화 실천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15(월) 11:00
- 장 소 : 상주 문화회관
- 참 석 : 한재석 의원

ㅇ **봉산해병대 권역 종합개발사업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15(월) 12:00
- 장 소 : 포항시 장기면 (구)봉산초등학교
- 참 석 : 이정호 의원

ㅇ **한국사과협회 하계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7. 17(수) 10:00
- 장 소 : 예천문화회관
- 참 석 : 도기욱 의원

ㅇ **포항시고등학생 수학캠프 참석**

- 일 시 : 2013. 7. 20(토) 09:30
- 장 소 : 포항장성고등학교
- 참 석 : 김원석 의원

ㅇ **제50회 대통령기 장사 전국씨름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7. 22(월) 14:00
- 장 소 : 문경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ㅇ **민주평통성주군협의회 출범식**

- 일 시 : 2013. 7. 22(월) 14:00
- 장 소 : 성주군청
- 참 석 : 박기진 의원

ㅇ **제16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3. 7. 22(월) 15:00
- 장 소 : 고령군청 대가야홀
- 참 석 : 곽광섭 의원

ㅇ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7. 23(화) 19:00
- 장 소 : 성주 월항주차공원
- 참 석 : 정영길 의원

ㅇ **'FTA 대응 감 산업 정책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7. 24(수) 10: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강영석 의원

ㅇ **제8회 한여름밤의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19:30
- 장 소 : 진량 근린공원
- 참 석 : 배한철 의원

ㅇ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7. 25(목)
- 장 소 :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 참 석 : 김희수 의원

ㅇ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협약식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1:00
- 장 소 : 의성 단북면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나현아 의원

o 친환경 해양신소재기업 (주)세경 울진공장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1:00
- 장 소 : 울진군 평해농공단지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o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1:00
- 장 소 : 울릉군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용진 의원

o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8: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o 2013 소믈리에와 경북 전통주와의 만남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26(금) 19:0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o 구미 초·중·고 전교사 상담연수 참석

- 일 시 : 2013. 7. 29(월) 09:30
- 장 소 : 금오공과대학교 대강당
- 참 석 : 박태환 의원

o 영천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7. 29(월) 11:00
- 장 소 : 제주회초밥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o 영주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화합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10:3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o 제11회 한·미친선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11:00
- 장 소 : 칠곡 리베라웨딩
- 참 석 : 송필각 의장

o 해평면 이장협의회 및 기관단체장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12:00
- 장 소 : 구미 해평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변우정 의원

o 2013년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7. 30(화) 13:00
- 장 소 : 구미시민방위교육장
- 참 석 : 구자근 의원

ㅇ **포항상옥 토마토 축제캠핑 참석**

- 일 시 : 2013. 8. 1(목) 11:00
- 장 소 : 포항 참느리마을
- 참 석 : 한창화 의원

ㅇ **안동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석**

- 일 시 : 2013. 8. 2(금) 11:00
- 장 소 : 안동 낙동강변탈춤공원
- 참 석 : 김명호 의원

ㅇ **2013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8. 2(금) 18:00
- 장 소 : 현대호텔
- 참 석 : 이 달 의원

ㅇ **2013 울진뮤직팜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8. 2(금) 19:00
- 장 소 : 울진 엑스포공원
- 참 석 : 황이주 의원

ㅇ **제18회 대진해변가요제 및 제10회 청소년 어울마당 참석**

- 일 시 : 2013. 8. 2(금) 19:00
- 장 소 : 대진해수욕장 특설무대
- 참 석 : 김기홍 의원

o 제3회 국태민안 호국통일 문무대왕 추모예술제 참석

- 일 시 : 2013. 8. 3(토) 14:00
- 장 소 : 경주 문무대왕암 해변
- 참 석 : 최학철 의원

o 안동교육대학 명륜교우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8. 8(목) 11:00
- 장 소 : 안동서부초등학교 체육관
- 참 석 : 홍광중 의원

o 청도복숭아 특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8. 8(목)
- 장 소 : 서초구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 참 석 : 김하수 의원

o 영양 고추 신품종 평가회 참석

- 일 시 : 2013. 8. 9(금) 10:00
- 장 소 :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의원

o 제1회 경산교육가족 합창제 참석

- 일 시 : 2013. 8. 12(월) 18:00
- 장 소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김창숙 의원

ㅇ **영천농아인협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8. 14(수) 11:00
- 장 소 : 영천수덕웨딩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ㅇ **2013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회식 및 환영만찬 참석**

- 일 시 : 2013. 8. 17(토) 18: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최우섭 의원

Ⅴ. 5분 자유발언

□ 2013년 8월 23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삼국통일의 화랑정신, 도의 실천의 선비정신, 국난극복의 호국정신, 조국근대화의 새마을정신 등 가히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 가운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극복을 위해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잘 살아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 국민에게 심어준 국민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는 가난에 찌든 지난 5000년의 과거와 단절하고 풍요의 새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도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모태이자 발상지로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성공의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전파하여 지구상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힘을 기울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 15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우간다 등에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 조성, 새마을리더와 대학생봉사단 현지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마을교육기관 개설, 새마을전문인력 양성,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마을세계화사업은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한국형ODA모델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유엔차원 협력요청, 경북도를 찾는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 주재국 대사들의 새마을운동 보급요청 등 국제적 관심을 보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구체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민선5기 김관용 도지사의 지방외교 분야의 최대 치적이자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성공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향후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동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민간, 집행부, 중앙부처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통한 민의의 반영과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경북도와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재원 등 협력,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활용 등 사업·추진·협력체계 삼박자가 갖추어질 때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경상북도, 중앙부처, 민간 등으로 구성된 가칭 새마을세계화 성공추진 데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새마을세계화사업의 프로그램 내실화와 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평가와 점검 등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익적 형태의 콘텐츠 개발입니다. 동 사업이 개도국 빈곤퇴치모델로 높이 평가받는 것은 저개발국에 단순한 원조가 아닌 빈곤 극복의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점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전수해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는 잡는 법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등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새마을연구기관과 새마을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사업 이야말로 지구촌 빈곤문제의 새로운 대안이자 근원적 처방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경북을 항공 MRO 메카로 육성 촉구>>

'말라비틀어지는 것은 비단 곡식만이 아니다. 불만 그어대면 그대로 불바다가 될 형편이다. 식물뿐 아니라 인간이고 짐승이고 시들대로 시들었다.' 이무영의 '기우제'의 한 대목입니다. 경북의 가뭄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여기에다 가뭄과 적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도민 여러분들께 우선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힘내시라는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후학육성을 위해 한결 같은 모습으로 애쓰시는 그 노고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불볕과 가뭄, 적조가 극심하였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고마운 단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이로 인해 밭작물이 말라죽는 것은 기본이고 저수지의 물이 바닥나 식수가 끊기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응급처방에

나서고는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다 피해도 21일 현재 어류가 120여 만마리 폐사하고 시가기준도 45억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멍게양식장에도 집단폐사가 우려되는 등 2차 피해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신속한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을 한국 MRO 메카로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보잉'사는 최근 영천시와 항공전자수리정보개조센터 즉, MRO 건립사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김관용 지사님이 영천을 아태지역 항공부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잉'사에서 투자키로 한 MRO센터는 공군 주력전투기의 전자부품 공급을 위한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갖추는 등 주로 대형 항공기의 유지, 보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을 아태지역의 항공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공항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울진공항은 정규노선이 운항되지 않고 군사비행장도 아니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최적지입니다. 현재는 민간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훈련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의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석호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지방공항 여유

시설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나서서 울진공항 일대 경비행기 MRO센터 건립을 정부와 함께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항공기는 2,000시간을 운항하면 엔진을 분리·수리·정비하는 오버홀(over haul)을 해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울진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군용기와 대형기는 영천에서 맡고, 틈새시장인 소형기는 울진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을 지사님의 생각대로 항공 MRO 메카로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 우리 도가 이와 관련된 특화대학을 울진에 건립, 인력을 양성하든지 아니면 기존 도립대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학에 울진만의 특화사업, 우리들만의 특화사업, 즉, 원자력 및 풍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집적지가 아닙니까?

또 영덕과 영양 등지에 풍력발전소를 갖고 있고, 또 국내 굴지의 기업인 SK그룹이 울진에다 대규모 풍력발전소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울진에 원자력 및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건설에서부터 부품, 보수, 정비, 해체에 이르는 학과를 개설해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이제는 과감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고전 '위대한 생각의 힘'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도의 위대한 생각의 힘, 즉 울진에다 경항공기 MRO센터 건립, 원자력 및 에너지 대학 설립을 통해 3백만 도민의 행복과 경북도의 번영을 고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호국경북, 광복 70주년을 준비하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광복절을 상해임시정부 청사에서 기렸습니다.
만리타국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만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리고 싶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떠올리며 청사를 둘러보는 내내 본 의원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열악한 공간에서 목숨 바쳐 투쟁했던 임정 요인들의 비장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라면서 유적지 주변을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죄스러웠습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주변은 헌법정신에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섯 분이나 다녀갔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지여야 할 그곳은 마치 용도 폐기된 유물을 보듯 쓸쓸함이 감돌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돌아보니 우리 경북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뿌듯해 하면서도 막상 그분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후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때마침 2015년은 우리 경북에도 매우 뜻 깊은 해 입니다. 신도청시대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출범하는 해이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을 대표 정체성으로 자부하는 우리 경북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 후손들의 삶과 기회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광복의 혼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중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북의 여류 독립운동가 김락 여사의 영웅적인 삶을 재조명하여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에 이어 경북의 대표여성으로 선정해 기릴 것을 제안합니다. 김락 여사는 퇴계 선생의 11대 직계손으로서 예안 의병장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야욕에 맞섰고, 을사늑약 직후 5적신(五賊臣) 처형을 상소했으며, 경술국치 직후엔 24일간의 단식으로 전국 최초로 자정 순국하신 향산 이만도 선생의 맏며느리였습니다. 1911년, 65세의 고령에 일가 150명을 이끌고 서간도 지역으로 집단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강습소를 세웠던 백하 김대락 선생의 여동생이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처제였습니다. 파리평화회의에 보낼 독립탄원서를 작성한 독립투사 기암 이중업 선생의 아내였으며, 독립군 자금 조달에 앞장섰던 동흠과 종흠 형제 독립투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종손이면서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한평생 '조선 최대의 파락호'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종가의 전 재산을 노름밑천으로 팔아서 만주에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던 자랑스러운 독립투사 김용환의 장모였습니다. 3대 문과 급제, 3대 독립운동가라는 항일정신이 투철한 반가(班家)의 안주인이었던 김락 여사는 집안 남자들의 독립운동을 안에서 돕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57세의 나이로 직접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두 눈을 인두로 지져서 처참하게 실명시킨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3대 독립운동가 가문의 중추를 감당해냈던 자랑스러운 여류 독립투사였습니다. 항일의병 활동에서부터 을사늑약, 경술국치에 이르는 과정, 파리평화회의와 3·1만세운동, 만주항일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독립군 자금 마련과 광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한 가문이 3대에 걸쳐서 역할을 했던 예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한 가운데에 신여성도 아닌 반가의 안주인인 종부가 중추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광복을 위해 바친 열정과 희생이 유관순 열사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았던 김락 여사의 영웅적인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호국 경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우리 선조들이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진면목을 후손들에게 면면히 전수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융성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년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영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도청이전지 이주민에 대한 대책 >>

안동출신 건설소방 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터키 이스탄불 소피아광장을 수놓았던 경북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이스탄불 경주엑스포, 2015년 세계 물포럼 개최예정 등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김관용 지사님은 통 큰 결단과 추진력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사님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낸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애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도청이전을 목표로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청사 및 의회청사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95%를 넘어 섰습니다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1단계 지구 52세대 중 상당수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원하며, 추진본부 및 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타법률을 우선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에는 철거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단지를 보장하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은 다수가 고령자이고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 자체 이주마을 조성 또는 이주자택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북도와 개발공사에서는 전세자금 5,000만원 융자 또는 농가 주택 수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이주한 주민들 대부분이 낯선 아파트와 주택지에 거주하면서 주변에 적응하지 못해 향수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남아 있는 이주민들은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요구하며 이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은 이러한 미이주 세대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지연으로 생기게 되는 엄청난 비용은 경북도나 개발공사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백년 고향을 지키며 우애를 나누던 이주민들이 남은여생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이주단지를 원하는 이주민이 몇 세대가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도와 개발공사에서 이주민들에게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택지 우선 분양권이 불법으로 거래 되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주자 택지 우선 분양권은 1차에 한해 전매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분양권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경우를 보면 기한 내에 이주자 택지 분양권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는 2013년 5월에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편입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10월에 공급대상자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첨을 통한 분양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불만과 불안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에 분양할 것으로 알고 지난 3월 전매 계약한 독거노인 한 분은 7,000만원을 받고 우선 분양권 본 계약서를 쓰고, 10월까지 분양권이 결정되지 않으면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총

보상금이 3,000만원 미만이며 우선 분양권 판매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상황에 처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발표를 믿고 전매한 이분의 경우 10월말까지 분양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2013년 5월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알려 지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공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해 발생한 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적극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경북북부 918번 지방도 선형개량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덕출신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도는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거미줄과 같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바, 도로, 철도 등 91개 주요 사회간접 자본 SOC 확충 사업을 2020년 완공 목표로 고속도로 10개 21조 7천억원, 철도 12개 38조원, 국도 44개 5조 1천억원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주-안동-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 충남북과 공동으로 울진에서 경북도청 신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 보령까지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 국토의 서해안과 남해안 축을 연계 할 수 있는 울산-영덕-삼척간 남북 7축 고속도로 등은 새로운 경북발전의 100년을 견인할 사통팔달의 도로망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연말까지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까지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로서는 경북 어디에서든 도청으로 직통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충남 당진에서 영덕까지 이르는 국도 34호선 등은 경북도청 신도시와 다른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주는 교통망이며 그 외에 국도 31, 35호선, 국지도 68호선(포항~안동) 국도 28호선(의성 비안~다인), 상주~영천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도로확충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및 중부내륙고속 철도사업 등의 철도망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신도청 이전지에 대한 수도권과 경북 남부권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중앙의 서민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SOC예산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 이어 국회 예결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경북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상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경북의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거미줄 도로망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지방도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해에서 영양, 그리고 봉화로 이어지는 918번 지방도입니다. 918번 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지방도로서 7번 국도와 연결되어 동서축 간선도로인 34호선 국도를 보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방도입니다.

그렇지만 918번 지방도는 현재 사실상 죽음의 도로로 불리 울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고 겨울에는 늘 빙판길이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통사고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는 도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도로 사정은 주민과 기업은 물론 관광객의 접근성을 떨어트려 경북 북부내륙 지역의 낙후성을 심각히 가중시켜왔을 뿐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북부내륙지역으로 전락하는데 한 몫 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북북부 내륙지역 도민들이 도로 이용률을 떠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소외감 해소 등의 차원에서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 공사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도 2009년 3월 31일 도정질문을 통해 918번 지방도 확충과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도 답변을 통하여 공감을 표하시고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추진과 동시에 2009년도 정부의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및 3대 문화권사업, 광역경제권사업 등 대단위 발전계획과 연계도 적극 검토해서 918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4년여가 지난 현재 별 진전 없이 도로의 열악한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 공사 실적은 모두 5건으로 모두 1.6㎞에 지나지 않아 918번

지방도 전체 108㎞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영해~영양구간에는 선형개량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18번 지방도 최근 10년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1.6	1,892	
2004	남면도로 선형개량	봉화 재산 남면	0.2	280	
2007	고계도로 선형개량	봉화 명호 고계	0.5	112	
2009	잣고개도로 선형개량	봉화 봉성 봉송	0.5	500	
2012	남면도로 선형개량	봉화 재산 남면	0.2	500	
2013	남면도로 선형개량	봉화 재산 남면	0.2	500	

존경하는 지사님

그동안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이 풍부한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것도 바로 취약한 교통인프라에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교통인프라는 사람과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시켜주는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주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하루 빨리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 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해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농수산물은 물론 사람들이 서로 오고갈 수 있게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북부도민들은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결단으로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 등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경북북부내륙과 동해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향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규칙 제정이 자체권능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러한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법규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체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규칙제정권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서 경상북도의회가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의회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몇몇 내부규범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경상북도 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공인 조례 이러한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자체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격상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그 안을 단체장이 제출하든 의회의 의원이 발의를 하든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공포여부는 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규범의 격상이 아닌 월권적 법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지금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표준조례로 지방의회에 내려준 이런 조례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례로서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보면 전국 227개 시·군·자치구 의회나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의회의 의회법규 운용현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숫자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모범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9대 도의회의 임기가 열 달도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9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자치법 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련된 조항 개정과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조례로 우리 의회 법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현재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위임조례로 운영될 일이 아니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해가지고 운용을 해도 충분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의회의 자율성을 요구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과 투쟁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권능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해서 의회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의원이 발의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의회 스스로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러한 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형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번에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지방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제언>>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도민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기업에 밀리고 밀려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춧돌로써 창조경제와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선인 시절 경제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누구 한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이 높아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예를 보면서 과연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인 2곳(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내식당, 매점 위탁운영권에 대한 입찰이 있었고, 결과는 모두 서울소재의 대기업에 위탁운영권이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8월 경북도 출연기관인 김천의료원 장례식장의 식당 및 매점 공개입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서울의 대기업(CJ 프레시웨이)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현장설명회에서는 지역의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입찰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없어, 정작 입찰에는 삼성, CJ, 한화 등 외지의 7개 업체만이 참여하였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실적, 운영노하우, 자본력, 브랜드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서울의 대기업을 지역 중소업체들이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 업체에서는 구내식당 밥상 하나도 제대로 차려낼 능력이 없을까요? 촌동네 구내식당의 밥상까지 대기업이 독식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마음엔 희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경북 혁신도시"를 비롯한 경북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앞서 본 사례들의 입찰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이 최고 5억원 미만으로 그 규모가 작아,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의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무조건 지역 중소업체에게 사업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입찰에서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격을 갖춘 지역 중소업체가 최소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중소업체가 초등학생이라면 대기업은 대학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루게 한다면 그것이 정당할까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이라도 의회, 집행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 입찰금액의 현실화,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수도권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지역 중소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허황되게 들리지 않도록, 우선 도내 공공기관에서 만큼이라도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23건

조 례 안

○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 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공무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3. 도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교수(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제척·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과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제9조에 따른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2.「법」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3.「법」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발굴·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대학교수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장
4. 여성 및 과학 관련 전문가
5.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과학 기술인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기관·단체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우대
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우대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우대

②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장애인기업업무 담당 국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의한 대구경북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시행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2.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무(외국인등록 및 재외국민투표업무는 제외)

별표 1의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중 봉화 약초시험장 위치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421"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를 "창조

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②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행정지원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 자치행정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본부장·실장·국장"으로, 제5조 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⑦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본부장·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제4조제1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제24조제1항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한다.
⑨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⑩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⑪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12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19. (생 략)

〈신 설〉

20. (생 략)

〔별표 1〕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제2항 관련)

<table>
<tr><th>명 칭</th><th>위 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r>
<tr><td>봉 화
약 초
시험장</td><td>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421</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td><td>

제12조(보건복지국) ----------
----------.

1.～19. (현행과 같음)

20.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무(외국인 등록 및 재외 국민투표업무는 제외)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별표 1〕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제2항 관련)

<table>
<tr><th>명 칭</th><th>위 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r>
<tr><td>봉 화
약 초
시험장</td><td>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부랭이길 81</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능직공무원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율	2% 이내	13% 이내	29% 이내	35% 이내	21% 이상

별표 3 중 일반직 소계란 "1,467"을 "1,498"로, 일반직 5급이하 중 합계란 "1,379"를 "1,410"으로, 기능직 계란 "293"을 "26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23호, 2012. 9. 14)에 의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2011. 9. 25 현재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미전환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기능직공무원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12% 이내	32% 이내	34% 이내	21%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일반직	소 계	1,467	-				
	⋮						
	5급 이하	1,379	-				
⋮							
기능직 계		293					
⋮							

개 정 안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기능직공무원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2% 이내	13% 이내	29% 이내	35% 이내	21%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일반직	소 계	1,498	-				
	⋮						
	5급 이하	1,410	-				
⋮							
기능직 계		262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여성정책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여성정책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창조경제산업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군수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시장·군수 칠곡군수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같은 법 제19조	(SOFA 자동차관할)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시장·군수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SOFA 자동차관할)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시장·군수 칠곡군수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SOFA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자동차관할)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규칙 제8조	시장·군수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시장·군수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시장·군수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같은 법 제83조2항(같은 법 제89조 준용)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 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같은 법 제38조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9조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같은 법 제42조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아.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준용)	
	타.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준용)	
	파.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준용)	
	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장·군수
	너. 청문	같은 법 제86조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록대상 사업에 한함)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시장·군수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 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시장·군수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 (제14조제1항, 제3항 준용)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아.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 정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4.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45.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46.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48.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4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제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조3, 제2조의4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 (공동검사 포함)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2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16조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같은 법 제18조의8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장·군수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1조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등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같은 법 제39조제6항, 제7항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78조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라. 사업의 승계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2항	
	마.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항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 너 지 산 업 과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시장·군수
	자. 위해방지조치의 명령 등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차. 보고·조사 등	같은 법 제40조	
	카. 청문	같은 법 제52조제4항	
	타. 과태료부과·징수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34조	
	4.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5.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	
	6.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7.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28조	
	8.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일자리투자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기업노사지원과	1.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위반사항 등에 대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 이행 명령 권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	시장·군수
	2.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10호부터 제14호, 같은 법 제41조제3항	
국제비즈니스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군수

안전행정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
세 정 과	1. 도 수입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인의 지정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다. 지정의 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시장·군수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같은 법률 제2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같은 법률 제21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 말소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같은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률 제29조	
	바. 청문	같은 법률 제30조	
	사. 수수료	같은 법률 제3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농수산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농 업 정 책 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 관리(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FTA농식품 유 통 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농 촌 개 발 과	1.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등록시 수원공소재지 시군에 등록 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단, 한국농어촌공사 구역내의 시설물은제외) 3.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단,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축 산 경 영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등 변경신고 수리 4.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5.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8.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시장·군수
수 산 진 흥 과	1. 보호수면의 관리 2. 육성수면의 관리 3.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수산업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	시장·군수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대기오염 경보발령·해제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임시차량 사용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제1항 제7호,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시군수입)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3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사-1.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사-2.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사-3.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사-4.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사-5.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사-6.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사-7.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사-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사-9.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신청 및 권리자에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시장·군수
	사-10.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아.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 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차.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카.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계약의 갱신 명령 등	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파.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3항	
	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 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표 17	
	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6	
	너.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 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더.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시장·군수
	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관리	같은 법 제19조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시장·군수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2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가-1.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나-1.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라.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제23조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마-1.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제16조, 제18조	시장·군수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같은 법 제28조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사-1.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차.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조합과 협의 등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하. 청문		
	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 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인정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너.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 제10조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업무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시장·군수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업장 중 다음 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	
	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바.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자.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7조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2조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제2호,	시장·군수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85조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94조제2항,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제3항제1호부터 제8호의2, 제4항제1호의2, 제2호	
	10.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나.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같은 법 제23조	
	다.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26조	
	라.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7조	
	마.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같은 법 제28조제2항	
	바. 유독물 영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	
	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아.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같은 법 제39조제1항	
	자. 보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출입 검사 등 연차보고서의 제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청문의 실시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12.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13.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14.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16.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같은 법 제45조의2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63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9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물산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
산 림 녹 지 과	1. 영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 림 녹 지 과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		시장·군수
	가. 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같은 법 제6조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제2항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6.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7.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지관리법」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 림 녹 지 과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 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군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의 대집행 등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 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보건복지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다문화행복과 보건복지과 공 통 사 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식 품 의 약 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약사법」 제31조제5항	시장·군수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약사법」 제45조제1항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약사법」 부칙 제4조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6조제2항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같은 법 제7조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	
	9. 마약류의 사고 보고	같은 법 제12조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	같은 법 제13조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44조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제3항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같은 법 제8조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같은 법 제29조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시장·군수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 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2항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 시공 등 조치 명령	같은 법 제37조제5항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 권한)	같은 법 제47조제1항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8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3호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4호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호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6호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7호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호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호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0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라. 도서관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시장 아. 공공청사 자. 수도공급설비 차. 하수도 카. 도축장 타. 방풍설비 파. 사방설비 하. 방화설비 거. 방조설비 너. 연구시설 더. 문화시설 러. 사회복지시설 머. 공공직업훈련시설 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서. 광장(단, 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함) 어.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저. 공공공지 처. 운동장(종합운동장제외) 커. 전기공급시설 터. 장례식장 퍼. 저수지 허. 가스공급설비 고. 방수설비 노. 유수지 도. 폐차장 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모. 청소년수련시설 보. 공동묘지 소. 화장시설 오. 봉안시설 조.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자동차정류장 토. 열공급설비 포. 방송·통신시설 호. 공동구 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누. 종합의료시설 두. 수질오염방지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 결정 및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6.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시장·군수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53조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부터 92조	
	10.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	같은 법 제98조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16.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4조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5조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49조제1·2·3항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0조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1조제3항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허가	같은 법 제52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7조제1·3·4항	시장·군수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5조제3항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7조제1항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2조제1항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3조	
	27.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4조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9. 도시지역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15만㎡이하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 (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제3항, 제52조, 제139조	
	3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3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도로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부터 제43조	시장·군수
	2. 권한의 위임·위탁	도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83조	
	4.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84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법 제29조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법 제31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제4항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도로법 제51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 등	도로법 제23조	
	10.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90조	
	11.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로법 제47조	
	12.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3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2, 제6조, 제8조, 제9조	
	14.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46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장·군수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부터 제69조	
	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다.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보상청약, 협의, 계약체결, 지급 등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	
	마.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바.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18. 지방도의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변경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 금지 및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 2	
	24.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2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면허증 반납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2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시장·군수
	27.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4조	
	28.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64조	
	29.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76조	
	30. 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89조	
	31. 과오납금 반환	「도로법」 제91조	
	32.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94조	
	33. 과태료	「도로법」 제101조제2항, 제3항	
건 축 디자인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24조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주택법」 제16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	
	나.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치 수 방 재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하천법」 제5조제2항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같은 법 제13조,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같은 법 제14조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보관	같은 법 제52조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	같은 법 제27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같은 법 제30조	
	7. 하천의 점용 허가(법제33조제1항제4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 제외) 및 고시	같은 법 제33조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 포함)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38조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 조치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치 수 방 재 과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시장·군수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 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 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하천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한함)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25.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변경계획 수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 및 보직발령권 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시험장간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농 업
	2.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권 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기 술 원 장 농 업
	3.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 포함)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기 술 원 장 직속기관장
	4. 연구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권. 단,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소 방 행 정 과	1.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대응구조 구 급 과	1.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권한		소 방 서 장
	가. 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7조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법 제9조	
	라.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0조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같은 법 제4조제3항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대응구조구 급 과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소방서장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32조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법 제34조	
	라.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5조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같은 법 제29조제3항	
	4.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		
	가. 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7조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법 제19조	
	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같은 법 제14조제3항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의 본소와 지소(출장소 등 본소의 하부기관 포함) 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사업소장 및 지소장
소방행정과	1.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장 포함)
대응구조구급과	1.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업무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한함)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같은 법 제19조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하. 대집행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너. 허가에 관한 협의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러.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버. 주민지원사업 서.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 로 철 도 과	1. 도로표지 정비 2.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3.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종합건설사업소장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창조경제산업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 너 지 산 업 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같은 법 제4조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7조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제3항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같은 법 제9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같은 법 제12조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 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같은 법 제16조	
	차.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명령, 시설 등의 봉인	같은 법 제29조	
	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34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 너 지 산 업 과	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같은 법 제38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파. 청문	같은 법 제40조	
	하.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에 너 지 산 업 과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같은 법 제15조제7항	
	자. 완성검사	같은 법 제16조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	같은 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같은 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	같은 법 제24조	
	하.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사무중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일자리투자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투 자 유 치 단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관 광 진 흥 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3. 조사측량 실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체 육 진 흥 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같은 법 제13조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수리	같은 법 제17조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같은 법 제19조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같은 법 제28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같은 법 제31조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 정지	같은 법 제32조	
	자. 청문실시	같은 법 제33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정 책 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환 경 안 전 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명령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카.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 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1호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2조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 연료사용승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7항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45조제4항	
	마.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82조	
	바. 청문	같은 법 제85조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같은 법 제82조 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제13호	
	나. 청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8. 유독물관리자 과정 및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9.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환 경 안 전 과	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다.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라.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마.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	
	바.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제7호·제13호·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0호	
	아. 청문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1호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2호	

보건복지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나. 의료보수의 신고	같은 법 제45조	
식 품 의 약 과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식 품 의 약 과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러. 청문	같은 법 제45조	
	머.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 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다. 보고 지시와 검사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제1항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바.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아.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76조제1항	
	자. 청문	같은 법 제77조	
	차. 약사감시원 등 임명	같은 법 제78조	
	카. 허가증 갱신	같은 법 제80조	
	타.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 폐지 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 권한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7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협의권	같은 법 제17조	
	자.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28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같은 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제3항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어.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5.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개발사업이 준공인가 및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2항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37조제5항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부터 사호에 관한 다음권한)	같은 법 제47조제1항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8조	
	6. 기초조사의 실시	같은 법 제4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같은 법 제6조	
	8.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7조, 제7조의4	
	9.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 원상회복명령	같은 법 제12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0.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7조의2, 제7조의4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1.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해제, 전환 및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12.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	
	1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	
	14.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의제 및 준공인가	같은 법 제19조의2, 제21조, 제37조	
	15. 산업단지내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25조	
	16.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같은 법 제26조	
	17. 산업단지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같은 법 제27조	
	18.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같은 법 제38조	
	19.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검사 등	같은 법 제47조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중지 처분 등	같은 법 제48조	
	21.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같은 법 제49조	
	2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23.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31조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같은 법 제3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법원 통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3항·제5항	
	24.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5.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지방도에 한함.) (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함) 가.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2.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부지 점용 양도신고 나.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라.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 승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57조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건 축 디자인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라. 주택의 감리 등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 같은 법 제2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토 지 정 보 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제45조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홍보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경상북도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 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도지사는 2년마다 도민의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도지사는 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도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도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8월 26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수정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 안 제1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함.

○ 안 제2조 제목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을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함.

○ 안 제5조제1항의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당해직”을 “해당직위”로 함.

○ 부칙 제3조의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를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로 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 안 제2조 제목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을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의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당해직"을 "해당직위"로 한다.

○ 부칙 제3조의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를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조문 정비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 ②~④ (제정안과 같음)	- 조문정비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 위원회 명칭 수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맞게 정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6. (생략)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6. (제정안과 같음) ③ (삭제) ④ ----------해당직위----------.	- 조문정비
부 칙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명칭 수정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 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법」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군수와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장·군수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8월 26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단체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호).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생략) 1. 경상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생략)	**제4조(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 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2. (제정안과 같음)	-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한 경우,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단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발생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산부”란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으로서「같은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산부가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방문 시 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형행과 같음)
(신설)	6.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으로서「같은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7.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대상) (생 략)	**제5조(지원사업 대상)**(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임산부가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방문 시 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3. (생 략)	4.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를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제2호 중 “게기된 자”를 “열거된 사람”으로,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12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 ----------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에 게기된 자 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현행과 같음) 2. ---- 열거된 사람 ----------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인정한 사람.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 ----------그 밖의---------- ---------- 지체 없이 ---------- ---------- 해당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월15일”을 “월 15일”로 하고, “본 업무외의”를 “본 업무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구분)”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

②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의 조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으로 하고,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를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2", "제5항"을 "「영」 제8조의 2", "「영」 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를 "「영」 제17조·「영」 제22조·「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로,

같은 조 제3호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같은 조 제5호중 "제24조"를 "「영」 제24조"로,

같은 조 제6호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같은 조 제7호중 "제29조"를 "「영」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경상북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 박 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현행과 같음) ② --------------------- 월 15일 ------------------------------- ------ 월 1 5일 -------------- ------------------------------- ------------------------------- ------------------------------- 본 업무 외의 ------------------- -------------. ③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 ----------- ---------.

현 행	개 정(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별표 1에 따라 ————.
〈신 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 수령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 중 ———— ———— ————. 2. 「영」 제17조·「영」 제22조·「영」 제26조 「영」 제29조 중————.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

현 행	개 정(안)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경상북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경상북도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4조 및 별표1"로 본다. 5.「영」제24조제5항 중---------- ----------. 6.「영」제27조----------.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생략)	7.「영」제29조----"안전행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 8.(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당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육성협의회 설치) ①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육성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국장과 투자통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제환경친화성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제3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시·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 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을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
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개발·보급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의 선정) ①도지사는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선정) ①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

1.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 지원
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①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2조제3호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주로 수확되는 일반대게를 말한다.
2. "수산자원 보호"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게어장"이란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 12] 주11)의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쪽 해역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를 말한다.

5.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와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①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업인이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
2. 그 밖에 대게의 자원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게 어장과 연접된 연안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관리실태 및 조사·평가 등)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조사·평가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대게조업 어선의 내역
2. 연간 버려지는 폐어망 실태
3. 대게어장에서 수거된 폐어망 수거·운반·소각·매몰처리 실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5. 그 밖에 대게어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책) 도지사는 제7조의 조사·평가에 따라 대게 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과 농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이내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안)
2. 심의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반조성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위원장과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공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 ①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농공단지 지원협의회(이하 "농공단지 지원협의회"라 한다)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 기능 및 역할)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 등 행사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①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4조제2항4호, 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24조(건설위원회의 구성) ②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3.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4.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5. 환경부차관 6.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제24조(건설위원회의 구성)** ②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 4. (삭제) 5. (삭제) 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 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할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예정가격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무정보과장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심사) ①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요청 등) ①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위원회는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요구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사)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9월 3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에서 용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4호 중 “가·감조정하는 경우”를 “가감조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 안 제14조제1호 중 “통보 받은 날로부터”를 “통보받은 날부터”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 중 “가·감조정하는 경우”를 “가감조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호 중 “통보 받은 날로부터”를 “통보 받은 날부터”로 수정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③(생 략) ④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 · 감조정하는 경우 ⑤~⑦(생 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가감조정하는 경우 ⑤~⑦(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14조(재심사) ①심사결과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 ·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생 략)	**제14조(재심사)** ① ---------- ---------- ---------- ---------- ---------- 통보 받은 날부터 ---------- ---------- ---------- ---------. ②(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2013년 9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 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 ---------- ---------- ----------.
1.~ 6.(생 략)	1.~ 6.(현행과 같음)
7. 〈신 설〉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②~③ (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